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하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67호, 2026. 2. 19. 공포, 2026. 8. 20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(안 제34조제2항),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(안 제36조제1항)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 제목“(진료의 종류 등)”을“(진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”을 “보훈병원,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및 법 제33조제2항”으로,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,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, “보훈병원 또는”을 “보훈병원,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은”을 “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장은”을 “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진료의 종류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4조(진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②·③ (생략)	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제35조(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)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·군에 <u>보훈병원</u>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(이하 “위탁병원”이라 한다)이 없는 경우(<u>보훈병원</u>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	제35조(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훈병원</u> ,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및 법 제33조제2항----- --- <u>보훈병원</u> , 공공단체의료기

포함한다)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의료법」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,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36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.

② (생략)

관 -----
 --- 보훈병원,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-----
 -----.

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장 또는 공공단체
의료기관의 장은 -----

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 ---
 -----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
기관의 장은 -----

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3